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2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7월 24일
발 의 자 : 김혜지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ㆍ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원형, 이희원, 임규호,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한ㆍ신, 홍국표, 황철규 의원(43명)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진압과 관련된 시설의 확충은 비교적 늦어지고 있고, 특히 전지를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충전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 공영주차장의 충전시설등에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4조).

다.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소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등”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소방시설”이란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일어난 경우

그 진압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마련 등) ① 시장은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 및 화재가 일어난 경우 그 진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등의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등의 화재 감지시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구획, 방화벽, 방화셔터 등의 방화시설
3. 질식소화덮개, 전지(電池) 전용 소화기, 상방향 직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시설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과 화재가 일어난 경우 진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충전시설등에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

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소방 계획(이하 “화재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4.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충전시설등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의 현황,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충전시설등을 건축물 외부 또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충전시설등을 건축물 외부 또는 지상에 설치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충전시설등의 화재 예방과 화재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민간 단체, 소유자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